

## ● 특정입소자 개호(개호예방) 서비스비용

시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포함되는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숙박비는 소득에 따라 부담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주지 구청의 개호보험 창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거주지의 구청에서 한도액 인정증을 받아 이용하실 때 시설에 제시해 주십시오.

### 대상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 포함)

- 단기입소 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단기입소 영양개호
- 개호노인 보건시설
- 개호노인 복지시설
-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 ■ 이용자 부담 등급 구분

이용자 부담 등급	
제4등급	제1등급~제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세대 과세)
제3등급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로 제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분
제2등급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로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
제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로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자</li> <li>● 생활보호 수급자</li> </ul>

○2015년 8월부터 제1등급에서 제3등급에 아래 요건이 추가됩니다.

배우자도 시정촌민세의 비과세이며, 예금과 저금 등이 부부 개별로 1,000만엔 이하, 부부 합산으로 2,000만엔 이하일 것.

### ■ 이용자 부담 등급과 부담 한도액(1일당)\*1

이용자 부담 등급	부담 한도액(1일)						
	식비	거주비					
		유닛형		종래형 개인실		다인실	
		개인실	준개인실	(특별양호형)	(노인건강양호형)	(특별양호형)	(노인건강양호형)
제4등급	부담 한도액 없음(시설과 계약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기준비용액	1,380엔	1,970엔	1,640엔	1,150엔	1,640엔	370엔 (840엔*2)	370엔
제3등급	650엔	1,310엔	1,310엔	820엔	1,310엔	370엔	370엔
제2등급	390엔	820엔	490엔	420엔	490엔	370엔	370엔
제1등급	300엔	820엔	490엔	320엔	490엔	0엔	0엔

※1 표의 기준비용액에서 부담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을 「특정입소자 개호(개호예방) 서비스 비용」으로서 오사카시가 시설에 지불합니다.

※2 2015년 8월 이후는 특별양호 노인실 다인실의 기준비용액은 840엔이 됩니다.